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2017. 4.

고 용 노 동 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동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자료는

2017. 4. 18.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됨에 따라 산업재해 은폐 금지 의무,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등 그 내용을 소개하고,

2016. 1. 27.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 규모의 기준 완화, 산업재해 보고 제도 개선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2016. 10. 28. 시행한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설명하며

아울러, 2017. 1. 2., 2017. 3. 3. 각 공포ㆍ시행된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사항에 관한 상세한 개정이유와 내용을 담아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차 례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법률 제14788호(2017. 4. 18. 공포, 10. 19. 시행)

1.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 3
2. 산업재해 미보고 시 처벌 수준 강화 ····· 7
3.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신설 ····· 9
4.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부과 ····· 11
5.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대상 작업 확대 ····· 15
6.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 마련 ····· 18
7.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23

제2편 대통령령 제27559호(2016. 10. 27. 공포, 10. 28. 시행)

1.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합리화 ····· 31
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 34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규모 등 마련 ····· 36
4.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정보제공 작업 합리화 ····· 47
5.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 등 세부기준 마련 ····· 49
6.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 정비 ····· 58
7.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 합리화 ····· 63
8.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 대상 확대 ····· 69
9. 행정권한의 위임 ····· 71
10. 직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79

제3편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169호(2016. 10. 28. 공포 · 시행)

1. 산재발생 보고제도 합리화 ····· 85
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 완화 ····· 88
3.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절차 등 마련 ····· 93
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의무 마련 ····· 98
5. 안전 · 보건교육 강사 추가 및 사업내 안전 · 보건교육 명칭 변경 ····· 101
6. 직무교육 대상 확대에 따른 교육내용 등 마련 ····· 104
7. 안전검사 면제 대상 합리화 ····· 112
8. 안전검사 대상 유해 · 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 명확화 ····· 114
9. 석면조사기관 인력기준 합리화 ····· 120
10.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련 행정처분기준 마련 ····· 122

제4편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175호(2017. 1. 2. 공포 · 시행)

1. 도급인의 재해예방 조치 장소 확대 ····· 127
2. 제조 등의 금지 물질 사용 승인 취소 규정 정비 ····· 129
3. 정보보호를 신청한 신규 화학물질의 공표명칭 변경 ····· 131
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규정 정비 ····· 135
5.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 ····· 137
6. 산업안전 · 보건지도사 시험 실시 기관 규정 정비 ····· 141

제5편 고용노동부령(안전보건규칙) 제182호(2017. 3. 3. 공포 · 시행)

1. 이륜자동차 운행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신설 ····· 145

2.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완화를 통한 안전기준 강화 ····· 147

3.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신설 ····· 149

4. 비상전원의 종류 명확화 ····· 153

5.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관리대상 및 관리수준 조정 ····· 155

6.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 작업 시 조치 명확화 ····· 161

7.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지급 및 착용 의무 신설 ····· 163

8. 밀폐공간에서의 작업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 166

9.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수시유해요인 조사 대상 등 명확화 ····· 180

Ⅰ. 법률 제14788호(2017. 4. 18. 공포, 10. 19. 시행)

□ 개정이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같은 장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작업과 그 밖의 건설공사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며,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사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법 제9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ㅇ 산업재해 미보고 시 처벌 수준 상향(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

고용부장관에게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

ㅇ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신설(법 제10조제1항, 제68조제1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ㅇ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부과(법 제18조의2)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는 그 각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해당 공사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ㅇ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대상 작업 확대(법 제29조제5항)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등의 설비와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도 도급인이 그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ㅇ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 마련(법 제15조제5항, 제16조제3항, 제36조의2제6항, 제38조의2제6항, 제49조제3항)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정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석면조사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ㅇ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법 법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업무의 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 건강진단기관이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Ⅱ. 대통령령 제27559호(2016. 10. 27. 공포, 10. 28. 시행)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906호, 2016. 1. 27. 공포, 10.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 마련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되,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함.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 · 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 보건교육 실시 등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ㅇ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마련(시행령 제26조의10)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 · 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 · 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일정한 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ㅇ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 기준의 완화 (안 별표 3 및 별표 5)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진처리업의 사업장에도 일괄적으로 안전 · 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관리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사진처리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도록 함으로써 그 기준을 완화함.

Ⅲ.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169호(2016. 10. 28. 공포 · 시행)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3906호, 2016. 1. 27. 공포, 10. 28. 시행) 개정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청의 절차,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절차 및 등록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시행규칙 제31조의4 신설)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면 태풍 · 홍수 · 지진 · 화재 등의 공사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요청 사유 및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되,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ㅇ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절차 및 평가 기준 등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 신설)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에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등록 요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인력 · 시설 · 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함.

ㅇ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

지금까지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도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34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 지도업무에 필요한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ㅇ 안전검사 면제 대상의 확대(시행규칙 제73조제11호 신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산업안전관리 의무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별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Ⅳ.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175호(2017. 1. 2. 공포 · 시행)

□ 개정이유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양중기 또는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대신 상품명으로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식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도급인의 재해예방 조치 장소 확대(시행규칙 제30조제4항)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함.

ㅇ 제조 등의 금지물질 사용승인 취소 규정 정비(시행규칙 제80조)

제조 금지 물질의 사용 승인 취소를 기속행위로 규정한 법 제37조 제2항과 달리 같은 내용을 재량행위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ㅇ 정보보호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의 공표 명칭 변경(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사업주의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 신청 시 기존에 “상품명”으로 공표토록 한 것을 “총칭명”으로 공표하도록 변경함.

ㅇ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요인 재분류
(시행규칙 별표11의 5, 12의2, 13)

“석면”을 허가대상 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분류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석면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령에 맞게 위치를 재분류함.

ㅇ 산업안전지도사 등 시험기관 규정 정비(시행규칙 제136조의3)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실시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중복규정하고 있어 동 내용 삭제함.

Ⅴ. 고용노동부령(안전보건규칙) 제182호(2017. 3. 3. 공포 · 시행)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시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할 풍속기준 완화를 통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방사선 발생 장치 등을 이동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방사선 경보기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유해 ·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을 높이며,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이륜자동차 운행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신설
(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86조제11항 신설)

사업주에게 배달 등을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하도록 함.

ㅇ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완화를 통한 안전기준 강화
(안전보건규칙 제37조제2항)

일반적으로 최대풍속 17m/s 이상의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기준을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함.

ㅇ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신설(안전보건규칙 제241조2 신설)

사업주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등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용접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여 함.

ㅇ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관리대상 및 관리수준 조정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 별표 12 제1호 및 제2호)

유해성 증거가 충분한 페닐글리시딜에테르 등 4개 물질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발암성 등과 관련한 국제 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ㅇ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지급 및 착용 의무 신설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2항 신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하여 근로자가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선 투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피폭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함.

ㅇ 밀폐공간에서의 작업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안전보건규칙 제619조, 별표 18 제18호)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결과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평소 출입이 제한되어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에 포함하여 밀폐공간 작업의 사전 안전성을 강화함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1. 법률 제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

1 도급인 ·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법 제9조의2, 제72조제4항)

□ 개정이유

○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원 · 하청 산업재해**를 **통합적**으로 **집계 ·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원 · 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 사업장의 산업재해 통계에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합산하여 통합적으로 산출 ·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 의무화**
(법 제9조의2제1항)

○ 도급인의 산업재해 건수 등 **공표**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9조의2제2항)

* **대통령령에서** 원 · 하청 통합 관리 **사업장 범위 설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제9조의2제3항)

*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기대효과

○ 안전보건조치 불량 사업장 공표 시 **하청업체의 재해도 포함하여 산정 · 공표**함으로써,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위하여----------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수급인----------.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72조(과태료) ④ ----------. 1.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한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2 산업재해 미보고 시 처벌 수준 강화(법 제72조)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국회, 언론 등에서 산재은폐 근절을 위해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요구 증가

○ 또한, 3일 동안 휴업한 경미한 재해와 사망 등 중대재해를 미보고한 경우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차별화 필요

□ 개정내용

○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 중대재해 미보고 시에는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로 상향

□ 기대효과

○ 산업재해 은폐가 근절되고 산재발생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져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 산재예방정책 수립 가능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과태료) ① (생 략)	제7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
<신 설>	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3. 제4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신설 (법 제10조제1항, 제68조제1호)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최근 기업 등에서 산업재해 은폐 행위가 다수 발생하면서 언론·국회 등으로부터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13~15년 울산 현대중공업(주) 및 사내 협력업체 관련 진정사건

△ '16.4월 포항 신한울원전공사장 현대건설 및 협력업체 관련 진정사건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

□ 개정내용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산재은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산재은폐 유인 억제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발생원인 등을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3. (생 략)	제68조(벌칙) ----------.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부과 (법 제18조의2)

□ 개정이유

○ 건설업에서 발주자가 다수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분리발주*의 경우, 하나의 공사 현장에 다수 업체 근로자의 혼재 작업과 도급자간 간섭 공종으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 존재

* 분리발주 의무대상 공사: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는 자가 없어 안전관리 공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우려

* '14.5.26. 고양터미널 설비공사장(발주자 : CJ푸드빌)에서 가스배관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우레탄폼에 옮겨 붙어 화재 발생(사망 9명, 부상 60명)

□ 개정내용

○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는 그 각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 해당 공사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기대효과

○ 분리발주 공사로 인해 다수의 시공사가 혼재되어 작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기여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0호의 발주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 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7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제7항·제9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3. ----------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⑦ ---------제6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대상 작업 확대 (법 제29조제5항)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 작업을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 작업 등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질식재해는 일반 사고재해 보다 사망가능성이 50배 높고, 붕괴재해는 단 1건의 사고라도 타 유형의 재해보다 3배 수준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연결되고 있으며

* '14년 사고성 재해자 82,947명 중 992명 사망(1.2%),
최근 5년간('10～'14) 질식재해자 178명 중 90명 사망 (50.6%)

** 건설업 전체의 경우 최근 5년간('11년～'15년) 사고 1건당 1.01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나, 가시설물 등의 붕괴사고는 1건당 3.2명의 재해자 발생

- 위 대부분의 질식재해 사고 등이 도급인으로부터 유해 · 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화학물질 설비 개조 작업 외에 도급인의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할 필요

□ 개정내용

○ 화학물질 등의 설비와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대해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 안전 ·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해당 수급인이 그 도급인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게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 시행시기

○ **(시행시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각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 ④ (생 략) 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 ·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 ·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 마련

□ 개정이유

○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또는 등록을 하도록 하는 기관은 13개* 분야가 있음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지정측정기관, 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 이 중 9개 분야 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 5개*분야의 기관에 대하여는 평가 및 평가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 민간 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 부재는 부실기관 난립 및 안전보건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개정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정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제5항, 제16조제3항 전단, 제36조의2제6항 및 제49조제3항 신설)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에 대한 위임 위탁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의 업무수준을 높이고, 사업장에게 양질의 안전 · 보건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고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수요자(사업장)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장의 만족도 제고 및 산업재해예방 효과를 기대

□ 시행시기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 ② (생 략)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6항----------. ----------

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
법률 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② (생 략)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③ ----------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 ⑤ (생 략)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⑦ (생 략)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 ⑤ (생 략) <신 설>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제5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⑥ · ⑦ (생 략)	⑦ · 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49조(안전 · 보건진단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제49조(안전 · 보건진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 · 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 위탁)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5조제5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	9의2. ---------- 양성교육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의2. · 11의3. (생 략)	11의3. · 11의4. (현행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 같음)
12. ~ 17. (생 략)	12.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제49조제3항에 따른 안전 · 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8. ~ 19. (생 략)	18. ~ 1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개정이유

○ 사업장에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법령 위반에 대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3가지 유형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적시에 안전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 또한, 민간 재해예방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 시설 · 장비 기준이 다른 유형의 기관에 비해 엄격*하고 시장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장에서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

* 안전인증·안전검사기관은 크레인, 고소작업대, 곤돌라 등 대형기계 기구를 대상으로 시험하기 때문에 정밀 측정기구 및 넓은 검사소 면적이 필요하며, 지정측정기관은 시료분석 등의 고가장비, 건강진단기관은 의사 등의 전문인력과 각종 고가의 검사 장비 필요

□ 개정내용

○ 업무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4개 분야의*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 건강진단기관

□ 기대효과

○ 사업장에서 적시에 안전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동시에 산업재해예방 효과를 기대

□ 시행시기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법 시행 전에 업무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④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 ----------.
제36조(안전검사) ① ~ ⑨ (생 략)	제36조(안전검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⑩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 ----------.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 ⑨ (생 략)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⑩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
제43조(건강진단) ① ~ ⑩ (생 략)	제43조(건강진단)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	⑪ ----------

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 ----------.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3항,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2. ---------- 제34조의5제1항,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3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 8. (생 략)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15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 1. ---------- 제36조의2제8항---------- 제49조제5항---------- 2. ~ 8. (현행과 같음) ② ---------- 제36조의2제8항---------- 제49조제5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제4항 전단, 제36조제10항 전단,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업무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대통령령 제27559호
(2016. 10. 27. 공포, 10. 28. 시행)

1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합리화(시행령 제8조의4)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재해율 ·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산업재해 미보고,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보건 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공표할 수 있음

○ 그러나,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경미한 산업재해만 발생하여도 공표될 수 있어 안전보건 조치 불량 사업장을 공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

【산재다발사업장 공표 기준 문제점】

○ **경미한 재해**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아도 개인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나, **경미한 재해만 발생한 사업장도 공표대상에 포함되는 사례 발생**

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경미한 재해자가 3명 발생 시 공표대상에 포함되는 사례 발생

* 전자제품제조업의 근로자수 100인 사업장의 경우 경미한 재해자가 3명 발생시 재해율이 3%가 되어 규모별 같은 업종의 상위 10%의 재해율(1.27%)보다 높아 공표대상에 포함

② 규모가 큰 사업장도 경미한 재해자가 3명 발생 시 공표대상에 포함되는 사례 발생

* 전자제품제조업의 근로자수 1,500인 사업장의 경우 경미한 재해자가 3명 발생시 재해율이 0.2%가 되어 규모별 같은 업종의 상위 10%의 재해율(0.16%)보다 높아 공표대상에 포함

○ **재해의 강도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공표대상 선정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

* 경미한 재해자 3명이 발생한 사업장은 공표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사망사고재해자가 1명 발생한 사업장은 공표대상에 미포함

○ 또한, 도급사업의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은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공동책임(법 제29조제3항)을 부여하고 있어 도급인도 함께 공표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근거가 미비

□ 개정내용

○ **(기준변경)** 공표대상 사업장에 대한 기준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

* 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연간 약 900명 내외)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의 책임이 명백하므로 공표 제도의 취지에 부합

○ **(도급인의 공표 근거 마련)** 수급인 사업장이 공표대상에 해당되고,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원인이 도급인의 법 제29조제3항 위반에 기인한 경우 도급인도 함께 공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공표 기준을 변경하여 안전보건 조치 불량 사업장을 공표한다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

□ 시행시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 **(적용례)** 제8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①----------.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안전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시행령 별표3, 별표5)

□ 개정이유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그러나 재해율이 매우 낮거나 업무상질병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개정내용

○ **(안전관리자)** 최근 산업재해율*을 감안하여 위험도가 낮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진처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100인 이상으로 함

* 최근 3년간 서비스업 평균 재해율 0.26% 대비, **부동산업 및 임대업**(부동산 관리업 제외) 0.15%, **사진처리업** 0%

- 단,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 부동산 관리업은 재해율이 높아(0.37%) 안전관리자 선임 완화 대상에서 제외함

○ **(보건관리자)** 특수건강진단 결과 업무상질병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진처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100인 이상으로 함

* 사진처리업은 최근 3년간 특수검진결과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요관찰자(C1) 및 업무상질병유소견자(D1)가 발생하지 않음<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4.7%>

□ 기대효과

○ 서비스업 중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아주 낮은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서 관련 사업장의 영업비용 부담을 최소화 시켜 경쟁력 강화 기대

- 아울러, 규제 합리화를 통한 관련 업계의 법규 수용도 제고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별표 3] <개정 2016.10.28.>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 22. (현행과 같음)			
23. ~ 27. (현행과 같음) 28. 도매 및 소매업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2명 이상	(현행과 같음)
29. ~ 32. (현행과 같음) 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처리업 36. ~ 38. (현행과 같음) 39. 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0. (현행과 같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다만, 제33호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부동산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5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현행과 같음)
41.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 5] <개정 2016.10.28.>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 21. (현행과 같음)			
22. ~ 32. (생략) 33. 연구개발업	상시 근로자 5,000명 이상	2명 이상	(현행과 같음)
34. 사진 처리업 35. ~ 39. (생략)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다만, 제34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5,000명 미만으로 한다.	1명	(현행과 같음)
40. (현행과 같음)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 · 규모 등 마련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 제19조의4 등)

□ 개정이유

○ 2016. 1. 2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에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 ·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개정내용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

○ **(사업의 종류)** 산재취약업종인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업장에 선임의무 부여

- 재해발생현황, 사업의 업태 등을 감안하여 일부 업종으로 한정

* 건설업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3～120억원)에 대하여 이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의무화(법 제30조의2제1항)하고 있어 제외

<50명 미만 사업장 재해 현황('14년)>

구분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재해율(%)	1.08	1.93	0.52	1.32	1.44	0.43	1.16
휴업90일 이상 재해율(%)	0.38	0.65	0.14	0.42	0.61	0.11	0.28
사망자수(명)	294	48	5	26	328	52	49

○ **(규모)**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하기 위해 어느 정도 조직규모를 갖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 선임의무 부여

-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500만원)하므로 자체안전보건조직 구성 가능 여부 및 단계적 시행을 감안

<규모별 사업장 현황('14년)>

(단위: 개소)

구분	30명 ~ 49명	**20명 ~ 49명**	10명 ~ 49명	1명 ~ 49명
계	12,233	**27,246**	68,671	358,871
제조업	11,334	25,343	63,632	330,828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경복원업	707	1,477	3,331	16,527
임업	192	426	1,708	11,516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 **(수 · 자격)**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

- 안전 ·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 · 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임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 · 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 '17년 하반기 산업안전 · 보건교육규정 개정 계획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지사
(교육시간) 16시간 내외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령, 재해사례 등

- (2017년) 30명 이상 제조업 일부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시범운영
- (2018년) 2018.9.1. 시행하는 30명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 (2019년) 2019.9.1. 시행하는 20명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 **겸직 가능**

○ **(업무)** 근로자의 안전 · 보건교육 등 최소한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안전 · 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 **(증빙)**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며,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도록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일

□ 기대효과

○ 안전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취약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율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시행시기

○ **(단계적 시행)**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0조 및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

-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8.9.1.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9.9.1.

□ 신 · 구조문 대비표

(1)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 · 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5.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 · 조언에 대한 협조 가. 산업보건의 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2.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 · 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 · 보건교육의 시간 ·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신 설>	제19조의6(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4항에 따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본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정수(定數)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임명 명령	2. ----------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삭 제>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5.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삭 제>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6. ~ 44. (생 략) ② (생 략)	16. ~ 4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2)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을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② --------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등(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 ---------- ---------- ---------- ---------- ----------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 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 교체임명 명령) ① ---------- 법 제15조제3항 · 제16조제3항 또는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사. 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4)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아. 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16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 제4호	1)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2) 보건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4 도급사업 시 안전 · 보건 정보제공 작업 합리화 (시행령 제26조제4항)

□ 개정이유

○ 도급인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제제를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의 '개조 · 분해' 작업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 '철거 · 해체작업'의 경우에도 화학물질 노출 · 중독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 · 보건 정보제공이 필요함

○ 통상적으로 설비의 '철거 · 해체'를 하는 경우에는 '분해'작업이 수반되므로 '분해'작업의 경우에도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개조 · 분해' 작업이 정보제공 대상 유해 · 위험 작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정내용

○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 위험 작업에 '개조 · 분해' 외에 '해체 · 철거' 작업 추가

※ 동 시행령 개정 후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 •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3항에 따른 설비의 개조 • 분해 • 해체 • 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한다'가 법 제29조제5항 각 호에 반영됨

□ 기대효과

○ 화학물질 관련 설비의 '해체 · 철거 작업'은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한 '유해 · 위험 작업'임을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 혼란이 해소되고, 궁극적으로 산재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 · 보건 조치)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 ·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3항에 따른 설비의 개조 · 분해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한다.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 · 보건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 철거하는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 · 평가 등 세부기준 마련

□ 개정이유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32조의2에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함

-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등록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마련하기 위함

>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 **제32조의3(준용)**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 개정내용

○ **(등록)**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에 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부장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개정 시행령 제26조의10)

○ **(평가)** 위탁기관의 평가 기준을 직무교육기관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함

*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등

○ **(제재)**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할 수 있는 사유도 직무교육기관 · 건설업기초안전 · 보건교육 기관과 동일하게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교육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

□ 기대효과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평가 및 제재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부실기관의 난립 방지, 교육서비스 품질 개선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교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및 안전보건교육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1)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10(안전 · 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2.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 ·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 · 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거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공단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26조의10제1항 및 별표 6의3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7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안전보

	건교육위탁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의 공개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 · 시설 · 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 · 충실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교육위탁기

	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교재 등) ①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②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2 제1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의6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가. ~ 다. (생 략)

<신 설>

----------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증-------.

⑤ ----------

------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⑥ (현행과 같음)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법 제32조의3 관련)

위반 사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 취소		

	3)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6)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7)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8)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라. ~ 버. (생 략)	마. ~ 서. (현행과 같음)
<신 설>	[별지 제9호의6서식]
<신 설>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9호의5서식] (생 략)	[별지 제9호의8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9호의6서식] (생 략)	[별지 제9호의9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9호의7서식] (생 략)	[별지 제9호의10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9호의8서식] (생 략)	[별지 제9호의11서식]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인력 · 시설 · 장비기준 정비 (시행령 제26조의10제1항 관련 별표 6의3)

□ 개정이유

○ **(인력)**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인력기준은 '90.7.14. 교육기관 지정제도 시행 시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고,

* '09.8.7. 교육기관 지정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인력·시설·장비기준은 그대로 유지

-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전문기관의 강사기준은 '92.2.24. 제정되어 시행령 별표 6의3보다 강화된 인력기준을 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이는 개정의 편리성을 감안, 고시로 강사기준을 강화한 것이며 현재에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기준에 따라 강사를 보유 ·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906호, 2016.1.27. 공포)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고시로써 정하고 있는 강사기준에 맞추어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행령 개정 시 고시의 강사기준은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3 인력기준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강사기준
○ 「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 「의료법」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중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산업안전·보건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산업안전·보건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시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등록 시설 외의 장소에서 교육 시에도 기준 이상(120㎡ 이상)의 시설을 활용토록 명확히 할 필요

□ 개정내용

○ **(인력)**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법정 인력기준을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강사기준으로 일원화

* 고시 제2014-65호「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 **(시설)** 등록한 시설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

□ 기대효과

○ 인력기준과 강사기준의 일원화를 통해 교육기관의 업무 혼선 방지,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신뢰도 향상

○ 등록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기준 이상의 시설을 활용토록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

□ 시행시기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등록에 관한 특례)**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10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10제1항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종전의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음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그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6의3]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 사업 내 위탁교육을 할 경우 갖추어야 할 인력 · 시설 · 장비기준 (제26조의10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위탁교육을 하기 위한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 · 시설 ·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안전 · 보건 관련 분야 기술사 2)「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3)「의료법」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기계 · 전기 · 화공 · 건설 · 보건 · 산업위생 · 안전관리 분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1) 관련 분야 기술사 2)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중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사무실: 30㎡ 이상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춰야 한다)

개 정 안

[별표 6의3]

안전 · 보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

(제26조의10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기본인력은 3명(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으로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시설 외의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 위탁교육을 하기 위한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 · 시설 ·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2. 인력기준

가.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안전 · 보건 관련 분야 기술사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가목에 따른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 · 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 · 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를 전공한 후 해당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 · 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 · 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7)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8)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 · 보건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안전 · 보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10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10제1항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종전의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그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7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인력 · 시설 · 장비기준 합리화 (시행령 제26조의14제2호 관련 별표 6의5)

□ 개정이유

○ **(하위규정 마련)**「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 개정에 따라 추가된 직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장비 기준 마련 필요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인력)** 안전관리자 등이 교육 대상이므로 고도의 전문성과 경력이 필요하나 인력기준이 낮게 설정

- 또한, 근로자 위탁교육 시 인력기준*이 강사기준** 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어, 법정인력이 강의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5 제2호(인력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65호「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별표1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6의5 인력기준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강사기준
ㅇ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ㅇ 관련 분야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ㅇ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ㅇ「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ㅇ「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산업안전·보건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ㅇ 산업안전·보건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ㅇ 산업안전·보건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ㅇ「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ㅇ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시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등록 시설 외의 장소에서 교육 시에도 기준 이상(120㎡ 이상)의 시설을 활용토록 명확히 할 필요

○ **(장비)** 교육대상별 장비기준을 산업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재검토할 필요

□ 개정내용

○ **(하위규정 마련)**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장비 기준 마련

○ **(인력)** 영 별표 6의5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인력기준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65호「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별표1 제3호에 따른 강사기준을 일원화

- 교육대상별 관련분야를 산업안전, 산업보건 분야로 명확히 규정하고

- 교육대상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 강사 각 1명을 확보하도록 함

○ **(시설)** 등록한 시설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

○ **(장비)** 교육대상별 업무내용과 관련성이 부족한 장비는 삭제, 기기의 현대화에 따른 기능 개선 장비는 통·폐합하는 등 장비 기준 정비

* ▲(안전관리자 등) 13종 → 9종, ▲(보건관리자 등) 12종 → 10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0종 신설,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11종 신설

□ 기대효과

○ 인력기준과 강사기준의 일원화를 통해 교육기관의 업무 혼선 방지,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신뢰도 향상

○ 등록한 시설 외의 장소에서 교육 시에도 기준 이상의 시설을 활용토록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

○ 업무관련성이 부족한 장비는 교육기관의 등록 장비에서 제외하는 등 장비기준을 정비하여 교육대상별 필수 활용장비에 대한 맞춤형 집중 교육을 실시

□ 시행시기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별표 6의5]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 · 시설 · 장비 기준 (제26조의14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기본인력은 3명[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사 2명(제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각 1명)]이며, 제2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로 보유하여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시설 외의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위탁교육을 하기 위한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2.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구분	교육대상	관련 분야
총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산업 안전	3) 안전관리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산업안전
산업 보건	6) 보건관리자 7)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8)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산업보건

비고: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관련 분야는 산업위생에 한정한다.

나. 인력별 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총괄 책임자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6)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강사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3. 시설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교육대상별 장비기준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회전속도측정기	1
2) 온도계측기(표면온도 측정용일 것)	1
3) 소음측정기	1
4) 절연저항측정기	1
5) 접지저항측정기	1
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7) 클램프메타	1
8) 검전기(저 · 고 · 특고압용일 것)	1
9)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나.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화학적인자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2) 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1
3) 소음측정기	1
4) 습구 · 흑구온도지수(WBGT)의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1
5) 검지관 등 가스 · 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6)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7) 청력검사기	1
8)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스모그테스터	1
9)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1
10) 심폐소생 인체모형	1
11) 혈압계	1
12)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13)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장비명	수량(대)
1) 절연저항측정기	1
2) 접지저항측정기	1
3) 클램프메타	1
4) 검전기(저 · 고 · 특고압용일 것)	1
5) 소음측정기	1
6) 검지관 등 가스 · 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1
7)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8) 심폐소생 인체모형	1
9) 혈압계	1
10)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
11)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라.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지역시료 채취펌프	1
2) 유량보정계	1
3) 입체현미경	1
4) 편광현미경	1
5) 위상차현미경	1
6)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일 것]	1
7)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일 것]	1
8) 아세톤 증기화 장치	1
9) 필터 여과추출장치	1
10) 저울(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일 것)	1
11)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일 것),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퍼센트 이하인 특등급일 것)]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8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 · 위험기계 대상 확대 (시행령 제28조의6)

□ 개정이유

○ 현행규정에 따르면 프레스, 전단기 등 13종의 유해 · 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 · 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프레스 ~ 13. 고소작업대

○ 그런데,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에서 끼임, 맞음 등의 산업재해가 빈발

* 일정거리 사이를 자동적·연속적으로 재료나 물품을 운반하는 기계장치

** 매니퓰레이터(소재, 시험편 등을 집어 이동시키게 조작할 수 있는 집게 팔)와 기억장치를 가지고 기억장치의 정보에 의해서 매니퓰레이터의 선회동작, 좌우이동 등을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계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컨베이어	계	2,072	541	543	557	431
	사망	46	11	16	13	6
	부상	2,026	530	527	544	425
산업용 로봇	계	174	43	52	38	41
	사망	12	2	6	1	3
	부상	162	41	46	37	38

< 컨베이어 >

< 산업용 로봇 >

□ 개정내용

○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안전검사 대상 유해 · 위험기계에 추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 기대효과

○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의 사용단계 안전성 확보를 통해 자체결함, 관리상의 결함을 해소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 시행시기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 · 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② (생 략)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 · 위험기계등) ① ----------. 1. ~ 13. (현행과 같음) <u>14. 컨베이어</u> <u>15. 산업용 로봇</u>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1항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9 행정권한의 위임(시행령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2)

□ 개정이유

○ 현행 지정(등록)기관 13개 분야의 지정권한은 고용부장관 3개 업무, 지방고용노동청장 4개 업무,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5개 업무, 안전보건공단 1개 업무임

* ▲고용부장관: 직무교육위탁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지방고용노동청장:**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업자,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공단 :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경우 고용부장관이 원거리에 위치한 기관에 대하여 밀착 관리가 어려워, 신속한 업무처리에 한계

* 직무교육위탁기관 17개소 중 서울(10개소), 경기(4개소), 인천(2개소), 경남(1개소)

- 아울러,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 제고를 통한 기관의 대형화·종합화를 위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 재해예방 서비스 제공의 광역화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

□ 개정내용

○ 고용부장관에게 지정권한이 있는 직무교육위탁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하고,

○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 5개 분야 기관지정 권한 중, 지정검사기관과 석면조사기관 업무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함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이라기 보다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철거멸실신고 명단 확보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업무이며, 등록기관이 전국에 2,500여개로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제외

**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대형 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하여 과징금제도 마련 등 제도 보완 후 개정 추진 예정이므로 제외

□ 기대효과

○ 지정기관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 확보, 광역화를 통한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역할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1)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정수(定數)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임명 명령	2. ----------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삭 제>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5.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삭 제>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6. ~ 44. (생 략)	16. ~ 44.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신 설>	6의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신 설>	6의4.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신 설>	6의5.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7. ~ 10. (생 략)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7. ~ 10.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26조의14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신청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1. ~ 3. (현행과 같음) ② ---------- 지방고용노동청장----------. ----------. 1. ~ 3.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고용노동청장----------별지 제9호의11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증 --------.

④ 영 제26조의14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영 제2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위탁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⑥ 직무교육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지방고용노동청장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이 ---------- 지방고용노동청장과 ----.

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생 략) ②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 1. ~ 6. (현행과 같음) ③ ---------- 지방고용노동청장은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0 직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시행령 별표 13)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고.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20	30
	법 제72조 제5항 제4호	2) 법 32조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20	30

○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의무 확대로 인해 이들이 직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필요하고,

- 직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로 명확히 할 필요

□ 개정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에게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주에게 부과할 과태료 기준을 마련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추가)**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추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추가)** 종사자

-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

□ 기대효과

○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교육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전문기관의 재해예방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 colspan="7">현 행</th></tr>
<tr><td colspan="7">[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 3. (생 략)
4. 개별기준
가. ~ 허. (생 략)
<table>
<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rowspan="2">세부내용</th><th colspan="3">과태료 금액(만원)</th></tr>
<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th></tr>
<tr><td rowspan="2">고.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td><td>법
제72조
제4항
제3호</td><td>1) 법 제32조제1항 제1호의 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td><td>5</td><td>20</td><td>30</td></tr>
<tr><td>법
제72조
제5항
제4호</td><td>2) 법 제32조제1항 제2호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td><td>5</td><td>20</td><td>30</td></tr>
</table>
노. ~ 챠 (생 략)</td></tr>
</table>

개 정 안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개별기준
 가. ~ 고.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노.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1) 법 제3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20	30
	법 제72조 제5항 제4호	2) 법 제32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20	30

도. ~ 캬 (현행과 같음)

3.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169호 (2016. 10. 28. 공포·시행)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합리화(시행규칙 제4조)

□ 개정이유

○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함

○ 그런데, '14.7.1. 산재발생 보고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 홍보 및 사업장 지도 · 안내 등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기간 내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제도 정착에 애로가 있으므로,

-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유인 · 독려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개정내용

○ '14.7.1.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써,

-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방관서에서 산재 발생을 인지한 시점에 일정기간 내(15일) 제출 명령 후, 기간 내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다만, '14.7.1. 이후 최초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 ▲안전보건관리체제가 구축된 사업장(안전 · 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재해예방전문기관 지도 대상 사업장 등) ▲산재은폐 정황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미보고 시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함

□ 기대효과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감소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가 누락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생략) <신 설>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② · ③ (생 략)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 제4항----------.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 완화(시행규칙 별표 5)

□ 개정이유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위탁사업장이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함

인력	시설	장비	대상 업종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전기·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년(산업기사는 12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실무경력이 5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단,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나) 일반기계·전기·화공·가스기사로서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4년(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 사람 4) (생 략)	사무실(장비실 포함)	1) 자분탑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2) 클램프미터 3) 소음측정기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5) 산소농도측정기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7) 절연저항측정기 8) 정전기전위측정기 9) 조도계 10) 멀티테스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토크게이지 13) 검전기(저압용·고압용·특고압용)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15)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모든 사업(건설업은 제외한다)
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 표에서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생 략)			

○ 이와 관련 추가 인력을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로 한정함에 따라 경력자 채용에 대한 어려움과 우수한 젊은 인력 확보를 저해함

□ 개정내용

○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수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하되,

- 사업장 수 150개소 또는 누적 근로자 수가 10,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인력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력직 중급기술자에 대한 구인난을 해소하고 신규 기술인력(청년층)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별표 5] <개정 2016.10.28.>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17조 관련)

1.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가. 인력기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제외)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 가목의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산업안전 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명 이하

2.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
 가. 기본 인력·시설 및 장비

인 력	시 설	장 비	대상업종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전기·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년(산업기사는 12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실무경력이 5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단,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나) 일반기계·전기·화공·가스기사로서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4년(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 사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단, 2명 이상인 경우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가)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사무실(장비실 포함)	1)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2) 클램프미터 3) 소음측정기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5) 산소농도측정기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7) 절연저항측정기 8) 정전기전위측정기 9) 조도계 10) 멀티테스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토크게이지 13) 검전기(저압용·고압용·특고압용)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15)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모든 사업(건설업은 제외한다)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직무 분야 중 기계 · 금속 · 화공 · 전기 · 조선 · 섬유 · 안전관리(소방설비 · 가스 분야만 해당한다) · 산업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 및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과 3)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1) 인력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 1)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비고: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구 분		자격별 인력기준(가목 1)부터 4)까지)				
사업장 수(개소)	또는 근로자 수(명)	계	1)	2)	3)	4)
150 이하	10,000 이하	5	1	1	2	1
151~180	10,001~12,000	6	1	1	3	1
181~210	12,001~14,000	7	1	1	3	2
211~240	14,001~16,000	8	1	1	4	2
241~270	16,001~18,000	9	1	2	4	2
271~300	18,001~20,000	11	1	2	5	3
301~330	20,001~22,000	12	2	2	5	3
331~360	22,001~24,000	13	2	2	6	3
361~390	24,001~26,000	14	2	2	7	3
391~420	26,001~28,000	15	2	2	7	4
421~450	28,001~30,000	16	2	2	8	4

451~480	30,001~32,000	17	2	3	8	4
481~510	32,001~34,000	18	2	3	9	4
511~540	34,001~36,000	19	3	3	9	4
541~570	36,001~38,000	20	3	3	10	4
571~600	38,001~40,000	22	3	4	10	5

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수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 경우 누적 사업장 수가 150개소 또는 누적 근로자 수가 10,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해야 하는 사람은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으로 한다.**

2) 장비기준: 지정인력 3명을 기준으로 3명을 추가할 때마다 가목의 장비란 중 2)·5)·6) 및 13)(저압용 검전기만 해당한다)을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3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 절차 등 마련(시행규칙 제31조의4 신설)

□ 개정이유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4에서 불가항력 또는 도급인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도급인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한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 * 법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내용

○ 건설공사 계약기간 중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사지연 사유(법 제29조의4제1항) 발생 시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수급인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공기 연장을 요청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함

- 공기연장 요청 시에는 공기연장 요청 사유서 등을 첨부하고, 도급인은 남은 공사기간 조정으로 정해진 공사를 완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연장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기대효과

○ 수급인에게 적정 공사기간 보장함으로써 안전 시공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여 재해예방에 기여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시행일 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수급인이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2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3] <개정 2016.10.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300	600	1,000
서. 법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신 설>	법 제72조 제3항제2호		300	600	1,00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5서식]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건설현장 개요	건설업체명	공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기간 연장 요청사항	연장 일수	
	변경 공사기간	

공사기간 연장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공사 지연 사실 증빙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의무 마련 (시행규칙 별표6의5 개정 및 별지 제44호의2 신설)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에 따르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기술지도 계약 여부를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술지도의 이행여부는 확인 불가

- 시공사가 고의로 기술지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부정적 효과 발생하고

- 발주자가 시공사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사에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가능성

□ 개정내용

○ **(완료증명서 제출의무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별지 제44호의2 서식 신설)를 발주자 및 시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 **(완료증명서 확인)** 발주자 및 시공사는 공사종료 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제출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 기대효과

○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발주자에게 시공사의 구체적인 기술지도 시행 여부를 알 수 있게 하여 기술지도의 주기준수를 통한 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 시공사가 고의로 기술지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

□ 시행시기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별표 6의5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행규칙 별표 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6. 기술지도결과의 기록 가. ~ 나. (생략) <신 설>	시행규칙 별표 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6. 기술지도결과의 기록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별지 제44호의2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5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 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 일자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6호다목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탁 사업장명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칭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	안전 · 보건교육 강사 추가 및 사업내 안전 · 보건교육 명칭 변경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별표 8, 별표 8의2)

□ 개정이유

○ 현행 시행규칙은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적격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시행규칙 제33조제3항)

* ①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②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④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편 유해 · 위험 예방 조치 중 제3장은 "사업내 안전 · 보건교육"이란 제목을 사용하고 있음

○ 법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시행령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신설에 따라,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적격자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추가할 필요

*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현행 시행규칙 제4편 유해·위험 예방 조치 중 제3장 "사업내 안전 · 보건교육*"에는 사업내에서 진행하지 않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음

* 시행규칙 제33조～제37조의5까지 포함

□ 개선방안

○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적격자에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추가함

○ "사업내 안전 · 보건교육"을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으로 명칭 변경

□ 기대효과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확대하여 사업주 부담완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명확한 역할 부여를 통한 업무 활성화

○ 자구수정을 통해 명칭의 모호성 및 해석상의 혼란 방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편 유해 · 위험 예방조치	제4편 유해 · 위험 예방조치
제1장 ~제2장 (생 략)	제1장 ~ 제2장 (현행과 같음)
제3장 사업내 안전 · 보건교육	제3장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 ② (생 략)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

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직무교육 대상 확대에 따른 교육내용 등 마련 (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 별표 8 및 별표 8의2)

□ 개정이유

○ 사업주는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법 제32조)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서 직무교육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대상자들이 이수해야할 교육내용 및 시간 등을 정하기 위함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개정내용

○ 신규 직무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내용 및 시간을 규정

-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자 교육내용과 동일,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내용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함
- **(교육시간)** 새로이 직무교육 대상이 되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는 기존 직무교육 대상과 같이 신규 · 보수교육 받도록 하고, 교육시간도 동일하게 정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하려는 자 중 안전 •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신규 교육을 면제하고, 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동일한 교육 내용이 중복되므로 신규교육을 면제함

○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제외)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시행규칙 별표 8)

* 한국경제연구원 중복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2시간/년)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산안법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산안법에 따른 특별교육(종사전 16시간) 이수 시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교육(16시간/2년)을 실시한 것으로 상호 인정토록 협의('15.9월)

□ 기대효과

○ 안전·보건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향상으로 재해예방에 기여

□ 시행시기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u>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u>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 <u>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u> ----------

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신 설>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신 설>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 설>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30조의2제1항----------
<신 설>	8.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영 별표 4 제8호 및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

	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별표 8]

산업안전 ·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3. (현행과 같음)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안전 · 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나.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제39조제2항 관련)

교육 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 · 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 ·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 · 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 · 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4) 안전 · 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 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 · 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 · 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 평가 · 실무에 관한 사항 3) 안전 · 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 · 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 · 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안전 · 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 · 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 · 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 · 평가 및 안전 · 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 · 분진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9) 안전 · 보건관리의 체제 · 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재 해 예 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 · 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 · 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 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 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 · 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 · 제거작업 및 석면비산방지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 · 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 · 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 · 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 ·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5. (생 략)

7 안전검사 면제 대상 합리화(시행규칙 제73조제11호)

□ 개정이유

○ 현행규정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유해 · 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설치가 끝난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실시하는 안전성에 관한 검사 등과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 면제

* 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②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③전기사업법, ④항만법, ⑤광산보안법, ⑥건설기계관리법, ⑦선박안전법, ⑧원자력안전법, 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⑩위험물안전관리법

○ 그런데, '15.1.1.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시설 전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사대상과 중복*되어 사업장의 이중규제로 작용

*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개정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 기대효과

○ 타법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로 사업장 부담 경감

□ 시행시기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안전검사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10. (생 략) <신 설>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 다른 법령에 따라 ----------. 1. ~ 10. (현행과 같음)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8 안전검사 대상 유해 · 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 명확화 (시행규칙 제73조의3)

□ 개정이유

○ 현행 안전검사 대상 유해 · 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설치가 끝난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 · 표시방법) ①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2.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 등: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그러나, 크레인 중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중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의 경우 검사주기를 '설치가 끝난 날부터'로 해석하여 혼선 발생

□ 개정내용

○ 수시로 이동하는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주기 기준을 '자동차 등록 이후'로 함

□ 기대효과

○ 안전검사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혼선 예방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컨베이어 또는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 · 표시방법) ①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 · 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 · 표시방법) ① ----------.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
2. 그 밖의 유해 · 위험기계 등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신 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9의5의 개정규정(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73조의3제1항제3호

	의 개정규정에 따른 컨베이어 또는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표 9의4] <개정 2016.10.28>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관련)

1. <현행과 같음>

2. 표시방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④ 합격번호는 안전검사기관이 아래와 같이 부여한 번호를 기입한다.

□□	-	□□	□□	-	□	-	□□□□
㉠ 합격연도		㉡검사기관	㉢ 지역(시도)		㉣ 안전검사대상품		㉤ 일련번호

㉠ 합격연도: 해당 연도의 끝 두 자리 수 (보기: 2010 → 10, 2011 → 11)

㉡ 검사기관별 구분(A, B, C, D .....)

㉢ 지역(시, 도)은 번호를 기입한다.

지 역 명	구 분	지 역 명	구 분	지 역 명	구 분	지 역 명	구 분
서울특별시	02	광주광역시	62	강 원	33	경 남	55
부산광역시	51	대전광역시	42	충 북	43	전 북	63
대구광역시	53	울산광역시	52	충 남	41	전 남	61
인천광역시	32	세 종	44	경 북	54	제 주	64
		경 기	31				

㉣ 안전검사대상품: 검사대상품의 종류 표시

순번	종류	표시부호
1	프레스	A
2	전단기	B
3	크레인	C
4	리프트	D
5	압력용기	E
6	곤돌라	F
7	국소배기장치	G
8	원심기	H
9	화학설비	I
10	건조설비	J
11	롤러기	K
12	사출성형기	L
13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M

㉤ 일련번호: 각 실시기관별 합격 일련번호 4자리

라. ~ 사. <현행과 같음>

[별표 9의5]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73조의4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사항

번호	항목	인 력 기 준	시설 및 장비기준
1	크레인ㆍ리프트ㆍ곤돌라ㆍ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이하생략)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이하생략)	○ 크레인ㆍ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외)ㆍ곤돌라ㆍ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이하생략)
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석면조사기관 인력기준 합리화(시행규칙 별표 10의3)

□ 개정이유

○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석면제품의 구별, 석면 시료의 채취·분석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석면조사자 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명과 분석 전담자 1인으로 구성(시행규칙 별표 10의3)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제도 도입으로 "석면조사자 과정 교육"이 직무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규정의 정비가 필요

> **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u>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u>

□ 개선방안

○ 인력기준 용어를 명확히 함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도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인력기준에서 별도의 '석면조사자과정 교육 이수 요건'을 삭제함

□ 기대효과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도입에 따라 종사자 직무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0의 3]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3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 제품의 구별, 석면 시료의 채취 · 분석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 1) ~ 2) (생 략)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 2) (생 략) 2. ~ 3. (생 략)	[별표 10의 3]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3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 2) (현행과 같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 2)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0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련 행정처분기준 마련 (시행규칙 별표20)

□ 개정이유

○ 현행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 기술지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 별표20 행정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6) 재해예방 지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도 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각 사업장별로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한 횟수를 모두 합산한다)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 그러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후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미비

* GPS 정보가 담긴 현장 전경사진, 기술지도 보고서 사진 또는 내용

□ 개정내용

○ 기술지도 실시 후 그 결과를 3회 이상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미입력 시 제재규정 신설

- 1차 업무정지 1개월/2차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1개월

□ 기대효과

○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기술지도 내실화로 건설현장 재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및 부칙규정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시행일 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 신 · 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시행규칙 별표20]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table>
<tr><th rowspan="2">위반사항</th><th colspan="3">행정처분 기준</th></tr>
<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th></tr>
<tr><td>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법 제30조의2제3항 관련)
1) ~ 6) (생 략)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 다) (생 략)

<u><신 설></u></td><td>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
</table></td><td>[시행규칙 별표20]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table>
<tr><th rowspan="2">위반사항</th><th colspan="3">행정처분 기준</th></tr>
<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th></tr>
<tr><td>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법 제30조의2제3항 관련)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회 이상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u></td><td>생략

<u>업무정지 1개월</u></td><td>생략

<u>업무정지 2개월</u></td><td>생략

<u>업무정지 3개월</u></td></tr>
</table></td></tr>
</tabl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2호 다목7)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4.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175호 (2017. 1. 2. 공포·시행)

1 도급인의 재해예방 조치 장소 확대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 개정이유

○ 법 제29조제3항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도급하는 사업주에게 그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재 발생 위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 · 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재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30조**는 위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20개**의 **장소**를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9조(도급사업시 안전 · 보건조치)**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시행규칙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 등)**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4. ~ 20. (생략)

○ 그러나, 지난 5.28. **서울 구의역 지하철 협착사고**의 경우 그 발생 장소가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 발생 위험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인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

□ 개정내용

○ 현행 도급인이 안전 · 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이외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함

□ 기대효과

○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 20. (생 략) <신 설>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 20. (현행과 같음) 21.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조 등의 금지 물질 사용 승인 취소 규정 정비 (시행규칙 제80조)

□ 개정이유

○ 현행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은 **제조 등의 금지물질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법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 **시행규칙 제80조(승인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 가중

□ 개정내용

○ 법 제37조에서 승인을 취소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규정에 배치되어 **중복 규정되어 있는 시행규칙 제80조를 삭제**

□ 기대효과

○ 상위 법률과 일치하지 않고 중복 규정된 시행규칙을 삭제하여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승인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의 제조 · 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① <삭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정보보호를 신청한 신규 화학물질의 공표명칭 변경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 **시행규칙 제91조에서** 사업주가 명칭 등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한 경우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보호 기준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을 **상품명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 내용을 최초 제조·수입자와 해당 물질을 구매한 자만 알 수 있고,

- 공표 후에 **상품명을 변경**하면 구매자 등이 공표된 물질목록에서 **변경된 상품명을 확인할 수 없음**

- 공표내용을 **환경부에 통보**하여도 상품명으로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물질목록과 **대조할 수 없어** 유해성 등 **확인 불가**

※ 환경부 유사제도인 '유해성심사'의 경우 심사 결과를 고시할 때 정보보호의 요청이 있으면 '**총칭명***'으로 고시

* 총칭명: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 고유명칭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16.7.7～10.4) 과정에서 원료물질인 PHMG가 우리부가 공표한 상품명(YSB-WT)이 아닌 다른 상품명(SKYBIO 1100 등)으로 양도·제공되어 사업주·근로자 및 환경부 등이 우리부 공표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지적

○ 또한, 정보보호 기간(5년*)이 만료되면 보호된 정보(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등)를 다시 공표하여 사업주·근로자 등이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4호) 제5조제3항

** 제3자가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이 우리부가 공표한 물질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이면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법 시행령 제32조)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확인할 필요

- 정보보호 기간 만료시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등을 다시 공표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재

□ 개정내용

○ 화학물질의 명칭을 사업주 임의로 공표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환경부 통보시 물질 **대조가 가능**한 **'총칭명*'으로 변경**

* 총칭명은 **명명법에 따라 작성**되므로 사업주의 임의변경이 불가, 총칭명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고시****의 **'총칭명 작성방법' 준용**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0호)

- 총칭명의 작성방법 등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반영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4호)

○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등을 **다시 공표**하도록 함

□ 기대효과

○ 공표명칭을 사업주·근로자 및 환경부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누락 또는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규화학물질 명칭 등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의 정보보호 요청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공표에 관하여는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름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 <단서 삭제>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CAS번호에 대한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경

	우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해당 정보보호기간 동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그 정보보호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요청, 타당성 평가기준 및 정보보호기간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 명칭 등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의 정보보호 요청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공표에 관하여는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규정 정비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별표 11의5)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 중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시행규칙 제93조 별표11의5에서 석면을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로 규정하여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령 제30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개정('16.2.17)에 따라 **"석면"**이 허가대상 물질에서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개선방안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정비(별표 11의5)

- "화학적 인자" 중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던 석면을 "분진" 항목으로 재분류함

□ 기대효과

○ 별표 11의5를 개정된 시행령 제30조(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사업장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담당자들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 관련) 1. 화학적인자 가. ~ 라. (생 략) 마.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14종) 1) ~ 12) (생 략) 13) 석면(Asbestos, chrysotile) 14)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15) (생 략) 바. (생 략) 2. 물리적 인자 가. ~ 나. (생 략) 3. 분진(6종) 가. ~ 바.(생 략) <신 설>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 관련) 1. 화학적인자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1) ~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14) 1)부터 11)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15)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2. 물리적 인자 가. ~ 나. (현행과 같음) 3. 분진(7종)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석면분진(Asbestos dust)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별표 12의2, 제104조제4항 별표 13)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에서 근로자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 13종을 별표 12의2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허가대상물질 13종의 하나로 석면을 열거**하고 있고,

- 별표13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서도 **석면**을 **허가대상 물질**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
>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 방법)**④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
>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 1. 화학적 인자
>
> 마.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13종)
>
> 13) 석면(Asbestos, chrysotile)
>
> **별표13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
> 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
> 가. 화학적 인자
>
> 5)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13종)
>
> 13. 석면

○ 그러나, **시행령 제30조**의 개정('16.2.17)에 따라 **"석면"**이 허가대상 물질에서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개선방안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정비(별표 12의 2, 별표 13)

- **"화학적 인자"** 중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던 **석면**을 **"분진" 항목**으로 **재분류**

□ 기대효과

○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시 **물질 분류에 대한 혼선이 해소**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2의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 라. (생 략) 마.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13종) 1) ~ 12) (생 략) 13) 석면(Asbestos, chrysotile) 14)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15) (생 략) 바. (생 략) 2. 분진(6종) 1) ~ 6) (생 략) <신 설>	〔별표 12의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12종) 1) ~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14) 1)부터 11)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15)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분진(7종) 1) ~ 6) (현행과 같음) 7) 석면분진(Asbestos dust)

<table>
<tr><td>3. ~ 4. (생 략)</td><td>3. ~ 4. (현행과 같음)</td></tr>
<tr><td>〔별표 13〕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100조제4항 관련)
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가. 화학적 인자
1) ~ 4) (생 략)
5)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3종)
1. ~ 12. (생 략)
<table><tr><th>번호</th><th>유해인자</th><th>제1차 검사항목</th><th>제2차 검사항목</th></tr><tr><td>13</td><td>석면</td><td>(1)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주요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폐활량검사</td><td>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td></tr></table>
6) (생 략)
나. 분진(6종)
1. ~ 6. (생 략)</td><td>〔별표 13〕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100조제4항 관련)
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가. 화학적 인자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6) (현행과 같음)
나. 분진(7종)
1. ~ 6. (현행과 같음)</td></tr>
</table>

<table>
<tr>
<td><신 설></td>
<td>
<table>
<tr><th>번호</th><th>유해인자</th><th>제1차 검사항목</th><th>제2차 검사항목</th></tr>
<tr><td>7</td><td>석면분진</td><td>(1)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주요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폐활량검사</td><td>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td></tr>
</table>
</td>
</tr>
<tr>
<td></td>
<td><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td>
</tr>
</table>

6 산업안전 · 보건지도사 시험 실시 기관 규정 정비 (시행규칙 제136조의3)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제3항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의 실시를 시행령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시행규칙에서도 **시험 실시 대행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중복 규정**

> **법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시행령 제33조의13**(시험 실시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
> **시행규칙 제136조의3**(시험의 실시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 개선방안

○ 시행령 제33조의13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대행기관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136조의3을 삭제**

□ 기대효과

○ 시행령과 중복 규정된 시행규칙을 삭제하여 법률 체계 정비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6조의3(시험의 실시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제136조의3 (시험의 실시기관)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고용노동부령(안전보건규칙) 제182호 (2017. 3. 3. 공포·시행)

1 이륜자동차 운행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신설 (제32조제1항제10호, 86조제11항)

□ 개정이유

○ 현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칙 제86조는 사용자가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크레인 등 운반 기구 등에 **근로자의 탑승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에 대한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안전규제에도 불구하고 배달 음식업 등에서 **이륜자동차와 관련한 사고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륜차 **승차용 안전모 지급** 및 **이륜차 안전 장치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개정내용

○ **(보호구 지급규정 마련)**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배달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함

○ **(이륜자동차의 탑승제한 규정 마련)**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재해 감소

○ 이륜자동차 정비 불량 등에 의한 배달근로자의 재해예방 기여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신 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 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 ⑩ (생 략) <신 설>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 ⑩ (현행와 같음) ⑪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완화를 통한 안전기준 강화 (제37조제2항)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할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도록 함

>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생 략)
>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그러나, 타워크레인 작업중지 풍속기준인 **초당 20미터**는 **태풍**으로 분류되는 풍속으로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 대부분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을 고려하여 현행 풍속기준인 초당 **20미터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

□ 개정내용

○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기준을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로 조정**

*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평균풍속(5분간) 10m/s 초과시 작업을 중지하고 있으며, 이를 순간풍속으로 환산할 경우 15m/s 에 해당

□ 기대효과

○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작업 시 강풍에 의한 낙하물 사고 등의 재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생 략)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 수리 · 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15미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신설(제241조)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사업주가 조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작업현장에서 **인화물에 대한 방호조치나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지하공간 등 밀폐된 장소에서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14.5.26, 사망 8명) ▲대우조선해양 화재('15.8.24, '15.11.10, 사망 각 2명) ▲서울 럭스나인 오피스텔 화재('16.3.28, 사망 2명) 등

○ 또한, 용접 근로자는 보안면*을 착용하고 해당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용접 작업 근로자**가 **가연물 착화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 같은 공간에 작업하는 경우 **비용접 근로자**는 화재위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화재발생 시 적절히 대피하기 어려움**

□ 개정내용

○ 사업주는 화재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 **용접 · 용단 등의 화기작업**을 할 경우, 사전 화재예방조치 및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적절히 대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형화재를 예방**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용접 · 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① ---------화재위험작업----------.

②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화재위험작업----------.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3.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비상전원 종류의 명확화(제308조제1항)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는 정전에 의한 기계 · 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화재 ·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계 · 설비에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비상전원의 종류에 대하여 규체적인 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에서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비상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혼선

*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에 공급하여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설비

□ 개정내용

○ 전기저장장치(ESS)을 포함한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 설비, 축전지 설비 등 비상전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 기대효과

○ 비상전원의 종류를 명문화하고, 전기저장장치(ESS)도 비상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8조(비상전원) ①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 · 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 · 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 설비에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08조(비상전원) ①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관리대상 및 관리수준 조정 (제420조 별표12)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보건조치 외 **추가조치를 준수토록 규정**

- 일부 물질에 대한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의 국제 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유해한 수준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해당 물질의 **관리 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움**

□ 개정내용

○ **(관리수준 상향)** 후보물질 중 관리를 강화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병 및 안전사고 감소 효과가 큰 물질 **24종의 관리 수준을 상향**

- 직업병 감소 효과가 매우 큰 물질 **20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

  * 디메틸포름아미드(생식1B), 에틸렌이민(발암1B), 디니트로톨루엔(발암1B) 등

- 직업병 감소 효과가 큰 물질 **4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

  *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생식1B), 페닐글리시딜에테르(발암1B) 등

- 본 개정에 의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된 물질을 **혼합물 규정***에 **반영**

  * 국제유해성기준(UN GHS)에서 정한 물질분류별 용량 비율 이상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혼합물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현행 규칙 별표 12의 제1호뇨목과 제2호처목)

○ **(정의 규정 구체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건강장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 기대효과

○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해 적정한 규제수준을 설정 · 관리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시행시기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2 제1호, 제2호자목 및 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특별관리물질에 포함되는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22조, 제423조제3항, 제424조제3항, 제431조, 제432조, 제434조, 제435조, 제448조 및 제451조제3항에 따른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42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으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 별표 12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2. ~ 9. (생 략)	제420조(정의) ----------.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24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fume), 미스트(mist)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2. ~ 9. (현행과 같음)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1. 유기화합물(113종)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1. 유기화합물(116종)

가. ~ 바. (생 략)	가. ~ 바. (생 략)
사. 디니트로톨루엔	사. 디니트로톨루엔(특별관리물질)
아. ~ 자. (생 략)	아. ~ 자. (생 략)
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카. 디메틸포름아미드	카.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타. ~ 너. (생 략)	타. ~ 너. (생 략)
<신 설>	더.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더. ~ 처. (생 략)	러. ~ 커. (생 략)
커. 2-메톡시에탄올	터.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터.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퍼.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퍼. ~ 루. (생 략)	허. ~ 무. (생 략)
<신 설>	부. 브이엠 및 피 나프타
무. ~ 수. (생 략)	수. ~ 주. (생 략)
우. 스토다드 솔벤트	추. 스토다드 솔벤트(특별관리물질)
주. ~ 드. (생 략)	쿠. ~ 므. (생 략)
르. 아크릴로니트릴	브. 아크릴로니트릴(특별관리물질)
므. 아크릴아미드	스. 아크릴아미드(특별관리물질)
브. ~ 스. (생 략)	으. ~ 즈. (생 략)
으. 2-에톡시에탄올	츠.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즈.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츠. ~ 트. (생 략)	트. ~ 흐. (생 략)
프. 에틸렌이민	기. 에틸렌이민(특별관리물질)
흐. ~ 디. (생 략)	니. ~ 미. (생 략)
리. 2,3-에폭시-1-프로판올	비. 2,3-에폭시-1-프로판올(특별관리물질)
미. 1,2-에폭시프로판	시. 1,2-에폭시프로판(특별관리물질)
비. ~ 치. (생 략)	이. ~ 티. (생 략)
키. 이염화에틸렌	피. 이염화에틸렌(특별관리물질)
티. ~ 야. (생 략)	히. ~ 챠. (생 략)

<신 설>	캬. 2-클로로-1,3-부타디엔
쟈. ~ 챠. (생 략)	탸. ~ 퍄. (생 략)
캬. 1,2,3-트리클로로프로판	햐. 1,2,3-트리클로로프로판(특별관리물질)
탸. ~ 려. (생 략)	겨. ~ 셔. (생 략)
며. 퍼클로로에틸렌	여. 퍼클로로에틸렌(특별관리물질)
벼. (생 략)	져. (생 략)
<신 설>	쳐. 페닐글리시딜에테르
셔. 삭제	<삭 제>
여. (생 략)	켜. (생 략)
져. 프로필렌 이민	텨. 프로필렌 이민(특별관리물질)
쳐. (생 략)	펴. (생 략)
켜. 하이드라진	혀. 하이드라진(특별관리물질)
텨. ~ 혀. (생 략)	교. ~ 됴. (생 략)
교. 황산디메틸	료. 황산디메틸(특별관리물질)
뇨. 가목부터 교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묘. 가목부터 료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 ----------]
2. 금속류(23종)	2. 금속류(23종)

가. ~ 아. (생 략) 자. 수은 및 그 화합물 차. ~ 저. (생 략) 처. 가목부터 저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3. 산 · 알칼리류(17종) ~ 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생 략)	가. ~ 아. (생 략) 자.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 차. ~ 저. (생 략) 처. ----------[----------,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은 0.3퍼센트, ----------] ---------- 3. 산 · 알칼리류(17종) ~ 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2 제1호, 제2호자목 및 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특별관리물질에 포함되는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22조, 제423조제3항, 제424조제3항, 제431조, 제432조,

	제434조, 제435조, 제448조 및 제451조제3항에 따른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 작업 시 조치 명확화(제497조의3제1항)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의3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으로 석면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폐석면

> 7. 폐석면
>
>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제품·설비 등을 의도적으로 해체 · 제거 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 건축물 등이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무너져 해당 잔재물을 처리해야 하는 등의 비의도적인 작업 시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음

※ **<사례>** '14년 2월 광주소재 00전자 창고(석면함유 건축물)가 화재로 85%이상 전소되었는데, 해당 석면함유 건축자재 잔재물(폐기물)의 수거·배출작업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볼 수 없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작업"으로도 볼 수 없어 환경부와 고용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연합뉴스, 2014.8.13. 보도)

□ 개정내용

○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규정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작업(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에 **국한하지 않고**

- **누구나** 석면의 제거작업 등에 사용된 비닐시트 · 방진마스크 · 작업복 등을 포함하여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화**

□ 기대효과

○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 처리작업 근로자도 습식작업 등을 통해 석면분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석면에 의한 직업병 발생을 예방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으로서 석면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습식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①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폐기물(석면의 제거작업 등에 사용된 비닐시트 · 방진마스크 ·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7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지급 및 착용 의무 신설 (제574조제2항)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4조에서 **방사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방사성물질의 밀폐, 차폐물(遮蔽物)의 설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경보시설의 설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 ~ 8. (생 략)

○ **비파괴검사 작업 시** 방사선 피폭량이 다른 작업에 비해 높아 **방사선 경보기 및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규정할 필요**

업종별 방사선 작업 종사자 수 및 피폭방사선량(2014년)

(단위: 명, mSv)

구분	전체	의료 기관	산업체	방사선 투과검사	생산·판매	연구 기관	교육 기관	공공 기관	군사 기관	원전
종사자 수	41,899	5,038	5,237	7,530	1,912	2,183	4,521	961	264	14,253
평균 선량	0.72	0.55	0.02	**2.37**	0.29	0.02	0.06	0.41	0.08	0.58

자료: 2015 원자력안전연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개정내용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3호의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동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여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를 지급·착용**하도록 함

□ 기대효과

○ 밀폐, 차폐 등 방사선 작업 장소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 외에 방사선 피폭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 피폭수준을 낮춰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57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함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생 략) <신 설> <신 설>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사업주는 「원자력안전법」제2조제23호의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비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2. 방사선 경보기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장비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57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밀폐공간에서의 작업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제3편 제10장 전부개정)

□ 밀폐공간의 범위 확대(제618조)

○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서 "밀폐공간"을 정의하고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함하지 못해 법 적용상의 한계 노출**

- 아울러, 유해가스에 일산화탄소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산화탄소에 관한 적정공기 기준**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선내용)** 「별표18」에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추가하고,**

* (개정)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 밀폐공간의 위험성으로 기존 산소결핍, 화재 · 폭발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가**하고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 시행 구체화(제619조)

○ **(개정이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환기 및 비상연락체계 등** 중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건작업 프로그램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함**

- 특히,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 **개별 규정에서 정하는 보건조치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부재**

○ **(개정내용)** 사업주가 수립해야 할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열거하고

- 특히,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결과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성 강화

- 아울러, 사전에 확인한 안전조치 내용 등을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토록 함

□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및 별지 제4호)

○ **(개정이유)** 밀폐공간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입금지 표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게시 자체를 간과되는 경향

○ **(개정내용)**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리고 출입금지 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출입금지 표지에 들어갈 내용을 별도 서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 내용이 포함된 표지를 부착토록 함**

□ 밀폐공간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호흡보호구 명확화(제620조 등)

○ **(개정이유)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외에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

* '14.6.10.(화) 현대미포조선(주)에서 전날 도장작업이 끝난 선박 내 탱크 내부에서 계단부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유기용제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총 3명 중독)한 바 있으며 모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방독마스크를 착용

○ **(개정내용)** 밀폐공간작업 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함**

□ 기대효과

○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내용 및 절차 등 사전 안전성 강화에 따른 질식사고로 인한 재해 예방

○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안전작업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법 준수 제고 효과

□ 시행시기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619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 5. (생 략)	제618조(정의) ----------. 1. ---------- 질식 · 화재 · 폭발 ----------. 2. “유해가스”란 탄산가스 · 일산화탄소 · 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 4. · 5. (현행과 같음)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 · 시행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8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 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2.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3.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이하 이 장에서 “송기마스크 등”이라 한다)의 착용과 관리 4.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

	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5.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0조(환기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0조(환기 등) ① ----------. ----------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62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22조(출입의 금지) ①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3조(연락)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24조(사고 시의 대피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공기 상태임	제624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

을 확인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제626조(구출 시 송기마스크등의 사용)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삭 제>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① ----------

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환기 등의 조치로 해당 작업장소의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2.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2.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6조(지하실 등의 작업) ① 사	제636조(지하실 등의 작업) ① --

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8 제1호에 따른 지층이나 우물 등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이나 핏트 등의 내부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는 경우에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의 ---------- 피트(pit) 등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에서 산소가----------.
제4절 관리 등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제638조(사후조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의 제19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하였을 경우에 즉시 환기 또는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설비를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8조(사후조치) ----------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
제639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제639조 (사고 시의 대피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공기 상태임이 확인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등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제643조(산소농도 등의 측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는 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 5.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농도 등을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작업장의 환기, 송기마스크등의 지급ㆍ착용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5절 보호구 등	<삭 제>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

제645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삭 제>
[별표 18] 밀폐공간 1. ~ 13. (생 략) 14. ----------,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16. (생 략)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신 설>	[별표 18] 밀폐공간 1. ~ 13. (현행과 같음) 14. ----------,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 15.~ 16. (현행과 같음) 17. ---------- 공기정화장치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신 설>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7. 3. 3.)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제622조 관련) 1. 양식 2. 규격 및 색상 가. 규격: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619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수시유해요인 조사 대상 등 명확화 (제657조제2항제1호, 제662조제1항제1호)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5조제2항에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 수시유해요인 조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 가목·라목 및 제6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유해요인조사: 작업상황(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작업조건(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작업 관련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을 조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가목(근골격계 유발 업무)·라목(근골격계질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및 제6호(피부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13.6.28)되어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개정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13.6.28)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

□ 기대효과

○ 수시유해요인 조사의 대상 작업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대상 사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생략)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 3. (생 략) ③ (생 략)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①----------.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생 략) ② ~ ③ (생 략)	1.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MEMO …

… MEMO …

… MEMO …

… MEMO …

… MEMO …

… MEMO …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2017년 4월 일 발행

발행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TEL : (044) 202-7690
FAX : (044) 202-8090

인 쇄 : 주현기획(044-864-2020)